

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-

# 제 안 설 명 서

2021. 4.



박왕규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박왕규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## □ 먼저,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달서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## □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,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.
- 안 제4조는 관광객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안 제5조와 제6조는 관광업무의 위탁,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-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관광진흥위원회 설치, 기능,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원의 임기, 위촉 해제,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- 끝으로,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회의, 의견의 청취,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**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**

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1년 3월 30일부터 2021년 4월 12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.

-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 달서구의 관광산업을 육성·지원하여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,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**

#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(박왕규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	
번 호	00821031

발의일자: 2021. 3. 30.

발의자: 박왕규, 홍복조, 안대국, 이영빈,  
박정환, 정창근, 김화덕

## 1. 제안이유

달서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관광객 유치 지원 등(안 제4조)
- 라. 관광업무의 위탁 등, 지도·감독(안 제5조~안 제6조)
- 마. 관광진흥위원회 설치, 기능, 구성(안 제7조~안 제9조)
- 바. 위원의 임기, 위촉 해제, 위원장의 직무 등(안 제10조~안 제12조)
- 사. 회의, 의견의 청취 등(안 제13조~안 제14조)
- 아. 포상(안 제15조)

## 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관광진흥법」
- 나. 비용추계: 비대상

##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「관광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을 따른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역사·문화·예술·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·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관광자원 개발, 관광객 유치 및 만족도 제고 등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4조(관광객 유치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·판매하는 경우
2.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마케팅 사업
3. 그 밖에 지역관광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5조(관광업무의 위탁 등)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1. 관광체험 프로그램 및 투어 운영
  2. 국내·외 박람회(전시회) 참가 운영 및 관광객 유치설명회
  3.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관광사업
  4.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지도·감독)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, 관계 공무원이 위탁업무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·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관광진흥위원회 설치) 대구광역시 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광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2.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
3.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
4.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

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  
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,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담당 국장과 관광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

1.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
2. 학계, 언론계, 시민단체, 관광 관련 기관·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
3.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

제10조(위원의 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11조(위원의 위촉 해제)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3.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제12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

제13조(회의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제14조(의견의 청취 등) ① 위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②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,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포상)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·법인·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